



제428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교육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27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제정 필요성	4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11
3. 주요내용 검토	12
가. 정의	12
나. 금융교육계획 수립 및 금융교육위원회 설치 등	14
다. 학교금융교육 지원	22
라. 사회금융교육 활성화 등	29
마. 국가·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및 금융교육 실태조사 실시	37
※ 참고자료	43
1. 금융교육 기관 역할분담방안 및 교육실적	4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5. 29.

3. 회 부 일 : 2025. 5. 30.

II. 제안이유

최근 주식, 펀드, ETF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조기교육' 열풍으로 출산 이후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한 해 50만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투자 열기는 높지만, 정작 금융 분야 시민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금융을 가장한 각종 사기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빚을 내어 투자한 청년들은 이러한 사기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재 각급 학교의 금융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금융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교육합니다. 미국 17개 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졸업 요건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필수 이수해야 하고, 5개 주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과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바른 투자 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금융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금융투자 습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Ⅲ.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을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과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금융을 활용한 생활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금융위원회가 학교에 대하여 금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마.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우수학교, 사회
금융교육기관,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국가금융교육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제15조 ·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등).

바.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요건 · 지정 · 교육 및 활동 등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융교육
주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금융교육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제정 필요성

□ 최근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¹⁾, 크레딧 스위스계 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무차입 공매도 등²⁾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112건으로, 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3,595억원에 달함.

[표 1]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업권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은행	건수	39	33	33	33	68
	금액	8,827	31,680	112,911	69,688	189,812
저축은행	건수	8	6	6	10	7
	금액	3,383	16,908	8,710	23,309	4,325
생명보험	건수	10	7	4	2	7
	금액	2,354	851	259	209	217
손해보험	건수	9	10	5	6	4
	금액	12,235	1,800	1,078	925	3,812
증권	건수	5	2	11	9	18
	금액	328	21,261	25,848	37,769	152,826
카드	건수	3	2	1	2	8
	금액	1,025	332	10	10,420	8,571
합계	건수	74	60	60	62	112
	금액	28,152	72,832	148,816	142,320	359,56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4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고 대상

※ 금융감독원의 보고접수일 및 사고금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1) 2024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에게도 고위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2025년 7월 현재 금융사별로 피해자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운영중임.

2) 크레딧스위스 산하 2개 계열사에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를 위반(2021~2022년)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27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³⁾를 살펴보면 2024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으로 2022년(66.5점)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20대 및 70대,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인바,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표 2] 응답자 특성별 금융이해력 수준

	연령						소득계층 ¹⁾			학력		
	20대 ²⁾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고졸미만	고졸	대졸이상
2022년 (A)	65.8	69.0	68.9	67.0	64.4	61.1	63.2	68.0	68.7	59.3	65.4	68.7
2024년 (B)	62.6	67.7	68.4	67.9	64.7	59.3	59.7	66.8	68.8	59.0	64.5	68.0
차이 (B-A) ⁴⁾	-3.2	-1.3	-0.5	0.9	0.3	-1.8	-3.5	-1.2	0.1	-0.3	-0.9	-0.7

주: 1)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3천만원~7천만원 중소득층, 3천만원 미만 저소득층으로 구분

2) 만 18~29세 3) 전문대학 포함 4) 푸른색 음영은 22년 대비 하락 주황색 음영은 22년 대비 상승한 계층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2025. 4.)

□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고 있음⁴⁾.

3) 만 18~79세 성인 2,400명에게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5. 4.)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또한 2021년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교육과정⁵⁾(2022. 12., 교육부 고시)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고등학교 융합선택과목⁶⁾으로 신설된바 있음.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편성 현황

교과	공통 과목	사회과 선택과목(19)		
		일반선택(4)	진로선택(9)	융합선택(6)
사회	한국사1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사회, 경제 ,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신설>,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자료: 금융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교육 활성화 등 협력방안(2024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의결안건) 재구성)

[표 4]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공통과목)의 금융 관련 주요 내용

학교급 (교과)	금융교육 관련 단위	주요 내용
초등학교 (사회)	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활동, 지역 간 교류, 상호의존 관계
	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제 성장의 효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무역의 의미, 무역의 이유
중학교 (사회)	경제생활과 선택	합리적 선택, 경제생활과 금융 생활,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경제 성장과 국내 총생산, 물가 변동과 실업, 국제 거래와 환율
고등학교 (통합사회)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택, 경제 주체의 역할, 국제 분업과 무역, 금융 생활

(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금융교육(백현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2023.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5) 2026년도 기준 고2학생 수업부터 적용, 2025년 상반기 중 과목 선택
- 6) 선택과목 중 교과 내, 교과 간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학생부(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절대평가 과목(정시전형은 미반영)

○ 이번 선택과목 신설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층·노년층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개인의 금융투자방식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복잡화되고 있으므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경각심을 기를 수 있도록 생애주기 별로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에 제정안은 금융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금융교육 및 사회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이 각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을 신설하여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생애주기 전반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고, 동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교육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⁷⁾, 「경제교육지원법」에 이미 금융분야를 포함한 경제교육⁸⁾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91호)

8)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제정안 내용 비교

구 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계 획	금융위: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 금융위: 국가금융교육계획(5년) - 시·도지사: 시·도 금융교육계획(5년)
위 원 회	금융교육협의회(의장 포함 25인) - 의장: 금융위 부위원장 - 위원: 기재부, 교육부 등 금융교육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비자보호 담당 금감원 부원장 - 역할: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 금융소비자 교육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	금융교육위원회(위원장 포함 20인) - 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민간위원(호선) -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교육 민간전문가 - 역할: 국가계획 수립·평가, 금융교육 활성화·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금융교육 우수학교 지정,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지정
교육 프로그램	금융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가·지자체: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금융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민간의 신청에 따른 우수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정 가능
조 사	금융역량 조사(3년) 및 정책 수립 반영	금융교육 실태조사(매년)
지 원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 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 의무	국가·지자체, 학교의 장, 사업자, 시민의 금융교육 실시 및 참여 책무
	-	- 학교: 학교금융교육 지원, 교육활동 반영 요청, 금융교육 우수학교 지정, 교원 등 연수 지원 - 사회: 사회금융교육 활성화, 사회금융 교육기관 지정
	-	국가금융교육센터, 지역금융교육센터 지정
자 격 제 도	-	금융복지교육사(양성기관 지정) →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금융교육 제공, 금융소비자 상담
기 념 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지정)	금융교육주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지자체의 학교·시민 등에 대한 금융교육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구체화한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금융교육 협의회 등을 통해 제정안에 반영된 사항을 다수 시행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법률간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 시 「금융 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 관련 조항을 개정·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OECD는 2008년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⁹⁾)를 설립하여 회원국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교육 정책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 “금융이해력을 위한 위원회 권고안”에서 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인 접근방식으로 연령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금융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금융교육을 수학, 사회, 시민교육, 경제 등 기존 교과목 내에 통합·연계하거나 별도 과목으로 마련하여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 영국은 중등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되 별도 교과목

9) International Network for Financial Education, 현재 130여개의 회원국이 가입중

이 아니라 수학, 시민교육 등 기존 교과 내 통합하는 방식으로 범교과적 금융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초·중·고교 과정의 기존 교과목(사회, 가정, 수학 등) 내 생활 속 금융 지식을 가르치는 형태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은 2003년 금융교육의 전략개발 및 추진을 담당하는 금융이해력 및 경제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conomic Commission: FLEC)를 설립하였고, 주(州)별로 상이하나 2025년 기준 27개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금융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별도 장 구분 없이 총 32개 조문과 1개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시·도 단위의 금융교육 계획 수립(제5조~제7조),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교육 위원회 운영(제8조), 학교·사회 금융교육 활성화 및 지원(제10조~제15조),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제16조~제20조),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제21조·제22조), 금융교육주간(제23조), 금융교육센터(제24조~제27조), 금융교육 실태조사(제28조) 등을 담고 있음.

[표 6] 제정안의 구성 체계

내 용	
제1조(목적)	제17조(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조(정의)	제18조(금융복지교육사의 보수교육)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제4조(책무 등)	제20조(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제5조(국가금융교육계획의 수립)	제21조(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제6조(시·도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제22조(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지정취소)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23조(금융교육주간)
제8조(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4조(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5조(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제10조(학교금융교육의 지원)	제26조(국가금융교육센터 및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1조(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27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금융교육 실태조사 등)
제13조(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	제29조(업무의 위탁)
제14조(사회금융교육의 실시)	제30조(청문)
제15조(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	제31조(벌칙)
제16조(금융복지교육사)	제32조(과태료)

3. 주요내용 검토

가. 정의

□ 제정안은 “금융교육”, “학교금융교육”, “사회금융교육”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과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금융을 활용한 생활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금융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3. “사회금융교육”이란 학교금융교육을 제외한 금융교육을 말한다.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융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금융교육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경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의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 금융교육을 구성하는 내용은 유아의 발달 및 경험 등을 상회하는 내용일 수 있으므로 유치원까지 동 제정안의 수범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금융교육계획 수립 및 금융교육위원회 설치 등

- 제정안은 국가·지자체·학교의 장·사업자·시민의 금융교육 관련 책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도 하여금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계획 심의·평가를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조).

제 정 안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금융교육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금융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금융의 기초적 지식과 그 올바른 사용 및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금융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금융교육계획의 수립)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금융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목표와 방향 2. 금융교육의 현황 3.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금융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금융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제 정 안

8.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도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금융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실적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반영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금융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 제21조에 따른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정 안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정안은 국가·지자체·학교·사업자·시민의 금융교육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위원회는 5년 단위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시·도별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 경제·법·문화예술 등 주요 전문분야별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본계획(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음.

[표 7] 전문분야별 교육 지원 현황

구분	경제	법	문화예술	환경	식생활	통일
법적 근거	경제교육진흥법	법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구분		경제	법	문화예술	환경	식생활	통일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교육 계획	종류	-	기본계획	종합계획(5년) 지역별 계획(5년)	국가계획(5년) 시·도계획(5년)	기본계획(5년) 시·도계획(5년) 시·군·구계획(5년)	기본계획
		-	시행계획(매년)	시행계획(매년)	-	-	-
	내용	-	-	① 국민인식 제고 ② 교원 전문성 강화 ③ 교육사 양성연수 ④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보급지원 ⑤ 교육시설·교육 단체 지원·평가 ⑥ 시설·장비 확충 ⑦ 연구 지원 ⑧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연계 ⑨ 협력망 구축 ⑩ 그 외 필요사항	① 목표·방향·현황 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③ 전문인력 양성 ·활용 ④ 교육자료 개발 ·보급 ⑤ 민간활동 활성화 및 국제협력 ⑥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방안 ⑦ 그 외 필요사항	① 목표·추진방향 ②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교육 ③ 농어업인·소비자 교류촉진 ④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⑤ 재원조달 계획 ⑥ 체험활동 활성화 ⑦ 그 외 필요사항	① 기본원칙·추진 목표와 방향 ② 부처·단체 협조 ③ 국민인식 제고 ④ 실태조사·평가 ⑤ 전문인력 양성지원 ⑥ 교원 전문성 강화 ⑦ 교재 개발·보급 ⑧ 기관·단체 육성 ⑨ 시설·장비 확충 ⑩ 연구 진흥 ⑪ 협력체제 구축 ⑫ 그 외 필요사항

□ 다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¹⁰⁾ 제정안과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30조(금융교육)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정안 반영 시 현재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의결되고 있는 금융교육 운영방안과 제정안에 따른 국가금융계획, 시·도별 금융교육계획이 중복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국가계획의 수립·평가, 금융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속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 금융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관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전문성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재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장)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¹¹⁾, 이와 달리 민간 출신 위원을 추가하여 별도로 금융교육위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¹²⁾에서는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 의장과 제정안에 따른 금융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구성이 유사하며, 금융교육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반영 시 관련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표 8] 금융교육협의회(금융소비자보호법)와 금융교육위원회(제정안) 비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교육협의회(의장 포함 25인) • 의장: 금융위 부위원장 • 위원: 기재부, 교육부 등 금융교육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비자보호 담당 금감원 부원장 • 역할: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 금융소비자 교육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	금융교육위원회(위원장 포함 20인) • 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민간위원(호선) •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교육 민간전문가 • 역할: 국가계획 수립·평가 금융교육 활성화·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금융교육 우수학교 지정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지정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이미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 운영 시 법정 위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 등¹³⁾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경제교육지원법」을 통해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경제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금융교육 진흥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경제교육지원법」상 ‘경제교육’의 범위에 금융교육이 포함되고, 동 법률에서도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제정안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여 교원지원·교과개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¹⁴⁾에서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13)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 금융교육학회, 금융연구원 등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위해서는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개별 자문 등을 거쳐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 학교금융교육 지원

-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과정에 학교금융교육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금융교육을 지원하고, 금융교육 우수학교를 지정·지원하며,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2조).

제 정 안
제10조(학교금융교육의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금융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금융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학교금융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금융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 중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금융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금융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교육 우수학교에 대하여 학교금융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금융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그 밖에 금융교육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금융교육을 지원하고, 금융교육을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는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금융지식과 주체적인 경제생활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긍정적 취지로 보임.

□ 현재는 초등학교 사회·실과 과목, 중학교 사회·기술가정 과목, 고등학교 통합사회·경제·기술가정·실용경제 과목 등에 금융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

[표 9]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공통과목)의 금융 관련 주요 내용

학교급 (교과)	금융교육 관련 단위	주요 내용
초등학교 (사회)	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활동, 지역 간 교류, 상호의존 관계
	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제 성장의 효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무역의 의미, 무역의 이유
중학교 (사회)	경제생활과 선택	합리적 선택, 경제생활과 금융 생활,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경제 성장과 국내 총생산, 물가 변동과 실업, 국제 거래와 환율
고등학교 (통합사회)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택, 경제 주체의 역할, 국제 분업과 무역, 금융 생활

(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금융교육(백현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2023. 8.)

- 공통교육과정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12%에 불과함.

[표 10] 2025년도 학교급별 사회 관련 교과목 및 채택 현황

교과목명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수	개설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개설 학교 수	비율
사회		606개	606개	100.0%	-		
실과		606개	606개	100.0%			
바른 생활		606개	606개	100.0%			
슬기로운 생활		606개	606개	100.0%			
사회		-			390개	390개	100.0%
기술·가정					390개	390개	100.0%
교과목명		서울지역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1~3학년					
		학교 수	학생 수	수강자 수	비율		
공통 과목	통합사회1,2	일반고 213교 자사고 16교 합계 229교	52,428명	52,428명	100.0%		
일반 선택	경제			6,267명	12.0%		
	정치와 법			12,533명	23.9%		
	사회·문화			28,853명	55.0%		
	생활과 윤리			28,424명	54.2%		
	기술·가정			3,986명	7.6%		
	실용 경제			2,340원	4.5%		
진로 선택	경제 수학	4,422명	8.4%				
	생활과 과학	22,205명	42.4%				
	가정과 과학	1,231명	2.3%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 참고로 2021년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교육과정¹⁵⁾(2022. 12., 교육부 고시)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¹⁶⁾으로 신설되었으며, 해당 과목의 채택 현황은 2025년도말 최종 집계될 예정임.

[표 1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편성 현황

교과 (군)	공동 과목	사회과 선택과목(19)		
		일반선택(4)	진로선택(9)	융합선택(6)
사회	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사회, <u>경제</u> ,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신설> ,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자료: 금융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교육 활성화 등 협력방안, 2024. 10.)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학생 수는 6,030명으로서 전체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447,507명 중 1.46%에 불과하였음.

[표 1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응시자 현황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외국어 /한문
					사회과학	직업	계	
인원 (명)	461,252	443,233	459,352	463,486	447,507	3,628	451,135	44,102
비율 (%)	99.5	95.6	99.1	100.0	96.6 (99.2)	0.8 (0.8)	97.3 (100.0)	9.5

(자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12.)

15) 2025년도 중 과목을 선택하여 2026년도 기준 고2학생 수업부터 적용될 예정임.

16) 선택과목 중 교과 내, 교과 간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학생부(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절대평가 과목(정시전형은 미반영)

[표 13]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탐구 과목별 응시자 현황

과목명	인원(명)	과목명	인원(명)
생활과 윤리	157,938	물리학 I	58,049
윤리와 사상	39,787	화학 I	44,074
한국지리	34,933	생명과학 I	129,818
세계지리	30,002	지구과학 I	142,672
동아시아사	17,521	물리학 II	5,148
세계사	15,457	화학 II	5,360
경제	6,030	생명과학 II	6,909
정치와 법	29,915	지구과학 II	4,508
사회·문화	164,456		

(자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12.)

□ 제정안은 학교 내 각종 금융 관련 교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교육 우수학교 지정을 통해 금융교육의 교과과정 반영을 확대하며, 나아가 교원 등에 대한 금융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학교금융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⁷⁾, 금융위원회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반영될 수 있

1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와
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제·법·문화예술 등 전문분야별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보면, 일부 분야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 교육과정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14] 전문분야별 교육 지원 현황

구분	경제	법	문화예술	환경	식생활	통일
법적 근거	경제교육 진흥법	법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학교 교육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반영	학교 법교육 지원	학교의 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협조 (학교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	환경부장관이 학교 교육활동에 환경교육 반영 요청 →교육부장관 반영 노력	학교는 매년 2회 이상 식생활교육 정기적 실시	통일부장관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반영

- 다음으로, 현재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경제교육 활성화 정
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법에 따른 “경제교육”의 정의에 일부
금융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¹⁸⁾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적
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
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표 15] 법령상 경제교육과 금융교육 비교

구 분		경제교육	금융교육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적 근거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 (’09.5년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1조 (’21.3월 시행)
정의		소비, 생산 및 금융을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
정부의 의무		학교안팎에서 경제교육 기회 제공, 경제교육 내용 마련,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 국민의 경제이해력 평가와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제공(경제교육지원법§4·5)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금융교육 시책의 수립·시행, 금융역량 조사 및 정책 수립(금소법§30)
의사 결정	명칭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주관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 정부 :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고위공무원 ▶ 민간 : 교육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각 1인(총5명)	▶ 정부: 금융위, 공정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고위공무원 ▶ 민간*: 금감원(소비자보호처장) * 민간 교육기관, 업권별 협회, 소비자 관련단체, 학회 등은 연석회의로 참여
	심의 사항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등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업무위탁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경제정보센터	금융감독원

라. 사회금융교육 활성화 등

- 제정안은 사회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금융교육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금융교육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사회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요건을 신설하며, 금융교육주간을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금융교육 의지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23조, 제27조, 제31조·제32조).

제 정 안
제13조(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금융교육 3. 사회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금융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금융교육에 대한 지원 5.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수 및 파견 6. 그 밖에 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금융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금융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금융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금융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금융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금융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정 안

④ 사회금융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금융복지교육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금융복지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복지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융복지교육사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업무와 금융교육 제공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복지교육사를 활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금융복지교육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금융복지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복지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자격증을 빌리거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제17조(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지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금융복지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중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금융교육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복지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이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는 제5항에 따른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지정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금융교육주간) 시민의 금융교육 의지를 높이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금융교육주간으로 한다.

제2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32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복지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개인은 평생에 걸쳐 금융시장의 참여자로 활동하게 되므로 금융교육 역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이해력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에 취약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50대 이상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이 75.4%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 기준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65.4%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음.

[표 16]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개인투자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투자자수	비중	판매금액	
				비중
20대 미만	3,564	1.7%	1,145	0.6%
20대	11,069	5.3%	5,378	2.7%
30대	12,158	5.9%	10,320	5.1%
40대	36,239	17.5%	32,819	16.3%
50대	67,592	32.7%	65,875	32.6%
60대	56,744	27.4%	59,736	29.6%
70대	18,124	8.8%	23,655	11.7%
80대	1,481	0.7%	2,864	1.4%
90대 이상	28	0.0%	120	0.1%
합계	206,999	100.0%	201,911	100.0%

주) 2021년~2023년 11월 기간 중 판매된 상품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표 17]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21년		'22년(A)		'23년(B)		증감(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대 이하	52	(3.1)	92	(6.4)	231	(12.0)	+139	(5.6)
30대	121	(7.3)	53	(3.7)	188	(9.7)	+135	(6.0)
40대	219	(13.2)	145	(10.1)	249	(12.9)	+104	(2.8)
50대	650	(39.3)	477	(33.1)	560	(29.0)	+83	(△4.1)
60대 이상	612	(37.0)	673	(46.7)	704	(36.4)	+31	(△10.3)
합계	1,654	(100.0)	1,440	(100.0)	1,931	(100.0)	+491	-

*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법인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전년 比 1.5배↑”, 2024. 3. 7.)

□ 제정안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사회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금융교육기관 지정 등 사회금융교육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사회금융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융복지교육사 제도를 도입하며, 금융교육주관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금융복지교육사 제도는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제도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발굴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및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¹⁹⁾ 수료자 또는 강의 경력자(최근 3년간 25회 또는 50시간 이상)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강의평가를 통해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고 3년의 인증기간을 두고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강사제도 도입 이후 2024년까지 총 779명이 전문강사로 인증받았음. 전문강사로 인증되면 e-금융교육센터²⁰⁾ 홈페이지 내 강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됨으로써 ‘1사1교 금융교육²¹⁾’ 등을 포함한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됨.

- 다음으로, 제정안에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주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금융의 날’ 기념일 등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금융교육주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0월 마지막 화요일을 “금융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²²⁾ 금융의 날 행사에서 매년 금융교육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참여한 금융회사 및 임

19) 금융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콘텐츠 활용법, 금융교육 수업 사례 등 강의법과 최신 금융지식을 교육하고, 연수참여율 80% 이상일 경우 수료하도록 설계

20)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21) 금융감독원이 주관하여 전국 금융회사와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47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직원에게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음.

- 나아가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 주관으로 매년 3월 넷째 주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 맞추어 해당 기간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마. 국가·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및 금융교육 실태조사 실시

□ 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금융교육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6조, 제28조).

제 정 안
제24조(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교육교재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광역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교육교재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금융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③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이하 “지역금융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금융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금융센터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가금융교육센터 및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금융교육센터 또는 지역금융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금융교육 실태조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국가금융교육센터, 광역금융교육센터, 기초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하고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금융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교육프로그램 개발, 금융교육 시책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²³⁾ 제정안에 따라 국가금융교육센터 외에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기초금융교육센터가 지정·운영될 경우 지역별 맞춤형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권역별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금융교육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²⁴⁾, 금융감독원 역시 지방분원 11곳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금융교육 지역협의회²⁵⁾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금융교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금융교육)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24)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금융교육 지역협의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교육협의회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임. 각 협의회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소재

육센터의 별도 설치 필요성과 함께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8] 지역경제교육센터 현황

센터명	주요업무
서울지역 경제교육센터	• 생애주기 각 단계의 국민 경제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 소외계층 및 지역 등 경제·금융교육 사각지대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 경제· 금융교육 강사양성 및 지원사업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학술 연구 및 포럼/ 세미나 • 경제교육관련 교구재 자료의 개발· 보급 및 출판· 홍보사업
부산지역 경제교육센터	• 부산 시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대학,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고령자, 장애인 등 • 강사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나는 강사다!」 운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교재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유아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경제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경제교육 실무협의회, 자문회의 운영 등
대구지역 경제교육센터	•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취약·소외계층(아동센터, 보육원, 청소년, 장애인, 재소자 등) 대상 중점 추진(교육편차 감소) • 지역 우수 인력의 경제교육강사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 대구지역 경제교육 유관기관들과 지역경제교육실무협의회 운영
인천지역 경제교육센터	• 학교 경제교육(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문 경제교육, 학교 디지털 경제교육) • 지역사회 경제교육(노인,취약계층,군인,장애인,지역아동센터,자립준비청년, 성인 금융 소비자 경제교육, 취약소외계층 디지털 경제교육) • 인천 맞춤형 경제교육(인천지역 경제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인천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인천경제교육실무협의회 개최)
광주지역 경제교육센터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공 •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중점 실시 •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지역경제교육의 허브
대전세종지역 경제교육센터	•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경제교육 실시 • 강사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경제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울산지역 경제교육센터	• 경제환경 변화적응 및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적 강사양성 및 일자리창출 • 경제교육 교류체계 구축 및 협업강화
경기지역 경제교육센터	•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함양 및 금융역량 함양 교육 추진 • 다양한 취약계층의 경제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경제교육 수행 • 디지털경제환경 적응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사업 • 미래기술혁신과 디지털전환 관련 교육서비스 개발
강원지역 경제교육센터	• 찾아가는 경제교육 운영 • 경제교육 자원 개발 : 경제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안, 교구 • 강원도내 경제교육 지역협의체 구축

대학 등 교육 수요기관과 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 등 교육 제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거주민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중임.

센터명	주요업무
충북지역 경제교육센터	• 교육 사업 • 연구·조사 사업 • 강사역량 강화사업 • 네트워크 강화사업
충남지역 경제교육센터	• 계층별 경제교육 운영 • 경제교육 교안개발 • 전임강사 육성
전북지역 경제교육센터	• 학생 대상 프로그램: 초, 중, 고등 대상 경제 기본 프로그램 등 •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 대학생 강사 파견으로 강의친화 도모와 대학생 강사의식 변화 유도 등 •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매칭 강화, 학부모 경제교육 및 재취업자 교육 • 일반기타 프로그램: 강사역량 강화 재교육 및 워크숍, 대학생강사 양성 교육
전남지역 경제교육센터	• 전남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소양함양 • 미래세대의 건전한 경제관 배양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마인드 함양 •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경제교육의 질적 성장 도모 •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지역경제교육의 허브기능 수행
경북지역 경제교육센터	• 찾아가는 경제교육 운영 • 경제교육 자원 개발 : 경제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안, 교구 • 경상북도내 경제교육 지역협의체 구축
경남지역 경제교육센터	• 경남도민의 건전한 경제관 확립과 경제이해력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경제교육 제공 • 학습자 니즈를 반영한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대상에 맞춘 콘텐츠 및 교구재 개발 • 지역 기반 전문 강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교육 활성화 • 취약계층(지역) 중점 • 지역 경제교육기관 허브로서 관련 기관 간 협업 체제 구축 및 교육정보 공유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 지역 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경제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경제교육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및 허브(Hub) 역할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 한편, 제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금융역량조사와 그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²⁶⁾

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금융교육)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사를 신설하기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역량조사에 금융교육 관련 조사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

【참고자료 1】 금융교육 기관 역할분담방안 및 교육실적

□ (교육목표)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하여 생애주기단계별(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중장년기, 노년기), 집단별(장애인, 새터민 등) 교육목표에 따라 필요한 금융지식을 선별

○ (교육기관) 교육기관의 실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별 주담당기관·협업기관을 지정하고 콘텐츠 개발과 연계

※ 금융교육 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2021년 5월 금융교육협의회)

< 생애주기별 배분 >

	아동·청소년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주담당기관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	예보
협업기관	서금원,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험, 여신협,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서금원,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험, 여신협,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서금원,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생보험,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신협중앙회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시니어금융교육 협의회, 신협중앙회

* 은행연, 손보험, 여신협, 개별금융회사 위탁교육 포함

< 특수계층 배분 >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신용회복대상자
주담당기관	금감원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서금원	신복위
협업기관	예보,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금감원, 서금원	금감원	금감원, 서금원

□ 14개 금융교육 기관별 주요 교육내용 및 실적

구 분	주요 교육내용 및 실적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대학교 실용금융강좌, 강사 양성교육, 수시 방문교육 등 • (대상) 청소년(초·중·고 학생), 대학생, 군장병,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일반인 및 금융교육 강사 대상 교육 • (실적) '24년 33.4만명
예금보험공사	방문교육, 유튜브 영상 교육, 비대면 화상교육 등 • (대상) 학생, 지역아동 및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주 • (실적) '24년 4.1만명
서민금융진흥원	찾아가는 금융교육, 온택트 강의(실시간), 동영상 교육 등 • (대상) 햇살론 등 정책금융 이용자 교육, 서민·취약계층 등 • (실적) '24년 12.4만명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방문교육, 실시간 화상 강의, 동영상 교육 등 • (대상)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신청자 등 교육 및 학생, 군인 대상 일반교육 • (실적) '24년 19.2만명
주택금융공사	찾아가는 금융교육, 비대면, 동영상 교육 등 • (대상) 청소년, 청년, 지역주민 및 고령층 등 교육 실시 • (실적) '24년 0.1만명
신용보증기금	산학연 연계 대학 강의, 현장 방문교육, 동영상 교육 등 • (대상) 청소년 및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 (실적) '24년 0.2만명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투자체험관 방문 교육, 수시 맞춤형 학교 방문교육, 청소년 대상 뮤지컬 운영 등 • (대상) 투자자,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자산관리 교육 실시 • (실적) '24년 2.3만명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금융뮤지컬 운영 등 • (대상) 초·중·고 학생과 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시 • (실적) '24년 14.2만명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방문교육, 비대면 화상교육 운영 • (대상) 중·장년층, 고령층 대상 교육 실시 • (실적) '24년 0.2만명

(자료: 금융위원회)